

---

#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건의

---

2021. 5

##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택근무 등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어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반도체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이 발생

-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포드, GM 등이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 현대차도 반도체 재고 상황 악화로 인해 일부 공장의 휴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협력 중소·중견까지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

\* 서울경제, 현대차 '반도체 보릿고개' 6월까지 이어진다, '21.5.6

\*\* 전자신문, 자동차 부품업체 85%,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경영난, '21.5.10

- 이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을 위해 반도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

\* 주요 국가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조세일보, 위기 닥친 반도체 없계..해법은 전폭적인 세제지원 '21.5.10)

- ①미국 : 반도체 인프라와 R&D에 56조원 지원, 설비 및 R&D 투자금액 40% 세액공제
- ②유럽 : 반도체 산업 500억유로 투자, 기업 투자비 20~40% 보조금 지급
- ③중국 : 28나노 이하15년 이상 기업에 법인세 10년간 면제, '30년까지 장비 등 관세 면제
- ④대만 : 반도체 R&D 최대 15% 세액공제, 인력육성 보조금 및 패키징 공정 테스트 비용 지원

- 우리나라 기업 세제정책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공제율 격차가 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

\*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최대 2%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반도체는 전체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19.4%, 992억달러)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기여가 큰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긴급

\* 산업부, 2020년 수출입 동향, '21.1.1

-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

< 분야별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및 인력 수급 수준 >



- 기업의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 및 부처에서 논의 중\*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을 타개하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 추경호의원안('21.4.22) :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 50% 세액공제  
 구자근의원안('21.5.7) :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 8월까지 '초과격' 지원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 계획

## □ 건의내용

-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                   |
|--------------------------------|-------------------|
| - (현행)                         | (건의)              |
| ① 시설 : 중소 10%, 중견 3%, 대 1%     | ⇒ 시설투자·R&D투자 동일하게 |
| ② R&D : 중소 25%, 중견 8~15%, 대 2% | 공제율 50%로 상향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현 황

-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 12%, 중견 5%, 그 외 기업 3% 공제

-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 □ 문제점

-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1년에도 대·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의 투자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대책마련이 시급

\*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진요인<sup>1)</sup> : 수요부진(34.2%), 불확실한 경기전망(31.3%), 자금조달난(15.2%), 코로나바이러스(11.0%) 順

<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sup>1)</sup> >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계획)	2019	2020	2021(계획)
대 기업	119.3	123.6	127.4	130.6	3.6	3.1	2.5
중견기업	28.2	24.6	21.6	19.7	△12.7	△12.2	△8.6
중소기업	20.2	18.0	15.4	15.4	△11.2	△14.1	△0.2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세액공제(48.0%), 정책금융(39.4%), 투자 규제 완화(12.6%)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sup>1)</sup>

1) 한국산업은행,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

- 그러나, '20년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의 실익이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
- 중소기업 공제율이 대폭 증가하고, 대기업의 공제대상 자산이 확대된 반면, 중견기업은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감소하여 오히려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세법개정에 따른 자산별 세액공제율 증감 >

제도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7%	▲1%	▲1%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3%	-	-
에너지절약시설	▲3%	-	-
환경보전시설	-	▼2%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2%	▼2%
안전시설	-	▼2%	-
생산성향상시설	▲3%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4%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2%	▼2%	▼2%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7%	-	▼2%

\* ■ 공제율 확대      ■ 공제율 축소

- 실제로 중견기업 지원이 축소된 제도의 '19년 일반법인 세액공제 총액은 6,247억원인 것에 반해 확대된 제도의 일반법인 세액공제 총액은 116억원에 불과하여 공제규모 차이가 현저하므로 개편된 제도에 따른 중견기업 공제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제도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제도명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 수	금액(백만원)	법인 수	금액(백만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확대)	4,251	67,390	193	11,643
① 환경보전시설(축소)	172	15,432	267	50,029
② 근로자복지증진시설(축소)	93	2,173	118	17,413
③ 안전시설(축소)	77	2,058	346	19,363
④ 생산성향상시설(축소)	503	21,682	607	537,864
①~④ 합계	845	41,345	1,338	624,669

\*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통칭하여 일반법인으로 표기

- 또한,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중소기업→중견 공제율 격차는 투자자산에 따라 1~5% 수준이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는 일괄 7%로 증가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절벽이 더욱 심화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있으며, 이러한 성장회피의 가장 큰 원인이 조세혜택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중견기업 간 지원격차를 완화하여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4.3%, 금융지원 21.3%, 공공조달 지원 10.3%, 중소기업 적합업종 9.1%, 기타 5.2% 順(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취지에 맞게 투자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중견기업 공제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중견 성장사다리를 확충할 필요

## □ 건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1안)(현행)중소10%, 중견 3%, 대1%(신성장 : 중소기업 12%, 중견 5%, 대3%)  
⇒ (건의안)중소·중견 10%, 대1%(신성장 : 중소·중견 12%, 대3%)
  - (2안)(현행)중소10%, 중견 3%, 대1%(신성장 : 중소기업 12%, 중견 5%, 대3%)  
⇒ (건의안)중소10%, 중견 5%, 대1%(신성장 : 중소기업 12%, 중견 7%, 대3%)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증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 문제점

-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BIG3 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유망 신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신산업 영위 비중이 높은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긴급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18.2월)

-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396개사(7.9%)  
(통계청, 2019년 기준 영리법인 통계)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4.33%에서 '17년 1.86%로 크게 감소(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9월)

- 핵심성장 BIG3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업종의 중견기업 분포를 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10.4%(29개사)에 불과하며, 바이오 업종도 코스닥 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비중이 높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소수에 불과

\* 자동차업종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11.1%, 코스닥 10.4%, 비상장 78.5%  
 바이오업종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37.2%, 코스닥 24.4%, 비상장 38.4%  
 (통계청, '19년 말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법령에 규정된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

##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 (건의)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 문제점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6.9%(기술격차 3.8년)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의 가파른 추격으로 기술수준 차이가 거의 없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

< 미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4년	2016년	2018년
한국	78.4	78.6	76.9	4.4	4.2	3.8
중국	69.7	71.1	76.0	5.8	5.2	3.8
일본	93.1	92.7	87.9	1.6	1.5	1.9
EU	95.5	94.4	94.8	1.1	1.1	0.7
미국	100.0	100.0	100.0	0.0	0.0	0.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술수준평가

-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단위:%, 억원) >

구분	전체	R&D투자		설비투자	
	투자금액	투자금액	구성비	투자금액	구성비
2019년 실적	286,499	78,224	27.3	208,275	72.7
2020년 계획	263,667	78,435	29.7	185,232	70.3
2021년 계획	251,779	79,204	31.5	172,575	68.5

\*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책자금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에서 차등 대우를 받게 되어 경영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도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녹록치 않은 상황

\* 중소기업 25%→중견 1~3년차 15%→중견 4~5년차 10%→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중소-대기업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지원절벽을 완화할 필요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많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투자 지속성 및 성과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제조중견기업(1,053개사, 규모기준)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86%(902개)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0.2)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각 구간별 중견기업 공제율을 5%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8조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 건의내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기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8% ⇒
  - (건의) 중견기업 1~3년차 20%, 4~5년차 15%, 6년차 이상 13%